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56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민형배·주철현·정동영

김문수 · 김정호 · 안도걸

이개호 • 박지원 • 소병훈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 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인가·허가·신고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5조).
- 라. 사업계획 승인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0조).
- 사.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에 대해 규정함(안 제 18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 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시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0조).
-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함 (안 제21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 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

- 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로 본다.
-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 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 또는 영농을 목적으로 임 차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
 -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 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

합"이라 한다)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로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 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4.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및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융자금 등 정

책자금의 운영 ·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 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 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이하 이 조에

- 서 "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 1. 발전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해제 절차·방법, 제5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 지역(이하 이 조 에서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라 한다)으로 조성할 수 있

다.

- ② 국가는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 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 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 조성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 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 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

- 제20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 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1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 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22조(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사용면적(농지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및 농업 생산량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3조(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고도 그 요청에 따르 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